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5호 2019. 9. 19.(목)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15호	도로명주소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19-117호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19-118호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정정 고시	7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225호	공시송달 공고 .....	10
남해군 공고 제2019-1227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남해군 공고 제2019-124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6
남해군 공고 제2019-1263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18
남해군 공고 제2019-1264호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21
남해군 공고 제2019-1265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7
남해군 공고 제2019-1266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9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1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1-5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15-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310-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86-3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4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198-150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9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11-5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54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703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748-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487-9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1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삼일로 606-24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799-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67	20090427	현재는 폐교이나 인근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길이었음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면리 산8-13, 산8-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31-15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65-7, 356-10, 365-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108-54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648-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한재로 48-4	20090427	산두곡이라는 고개의 동쪽인 동한재(동대)와 서쪽인 서한재(서대)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65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2040-18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36-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581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942-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63-2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87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4-129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548-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75-14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8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8-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63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81-78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구슬같은 시내라는 의미임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76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202번길 19-50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4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249번길 33-2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19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197번길 9	20091023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9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011번길 4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706-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79번길 7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58-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63번길 12-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50-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340번길 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21-93	2009102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01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531번길 6	2009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5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990번길 10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49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269번길 72-22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97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864번안길 33	20091023	설천로864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934-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105번길 29-7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42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53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면리 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56-21	2009042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3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면리 7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56-11	2009042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3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79-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1길 34-6	20100915	미조리에 있는 유인도, 섬의 형상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새섬이라고도 함
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45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124번길 38	20100915	평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2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56번길 79-44	20121011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469-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2	20090427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275-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다길 10	20160125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명 부여

남해군 고시 제 2019 - 117호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 남 해 군 수

####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19 외 14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L=380m)
- 사 업 비 : 2,60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8. 11. ~ 2020. 1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사 업 명	구분	합계	'18년까지	'19년 추진	비 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2,600	1,500	1,100	
	국비	1,300	750	550	
	도비	390	225	165	
	군비	910	525	385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055-860-3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남 해 군 공 보

(6) 제 645호

2019년 9월 19일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증감 사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기정	변경			
1	남해군남해읍 아산리	산144-19	유지	30	30	3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 촌공사	
2	"	산144-20	임야	136	136	136	경남 진주시 축석로	전○홍, 남해군	
3	"	산144-6	도로	397	397	345	남해군 남해읍	김○부, 황○를	구역 외 제척
4	"	산144-22	임야	2,645	2,645	2,645		남해군	
5	"	산144-17	유지	160	160	16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 촌공사	
6	"	산144-29	유지	145	145	145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 촌공사	
7	"	산144-28	임야	1,096	1,096	1,096		남해군	
8	"	산144-18	임야	78	78	78		남해군	
9	"	산144-27	임야	2,039	2,039	2,039		남해군	
10	"	1083-6	공장용지	4	4	4		남해군	
11	"	산144-25	임야	1,045	1,045	1,045		남해군	
12	"	1078-2	도로	7	7	7		남해군	
13	"	1078-3	답	74	74	74		남해군	
14	"	산144-24	임야	430	430	430		남해군	
15	"	산144-8	도로	1,983	1,983	995	남해군 남해읍	조○한 외 40	구역 외 제척
16	"	1417	천	51,709	-	684		(국)기획 재정부	누락분 반영
17	"	1076-3	도로	10	-	10		남해군	누락분 반영
18	"	1073-2	도로	7	-	7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153	하○휴	누락분 반영
합계				61,995	10,269	9,930			



남해군고시 제2019-118호

##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정정 고시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398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 9. 9.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지역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수요에 따라, 친환경·저탄소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도시민, 지역민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 남 해 군 공 보

(8) 제 645호

2019년 9월 19일

3. 사업비(변경없음)

-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기정)	소요예산(변경후)	비 고
<b>총 계</b>	5,383	5,383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국 비	840	840	
지 방 비	4,543	4,543	

4. 주요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화계리 398번지 일원
- 면 적 : 27,230㎡→28,254㎡(증 1,024㎡)
- 입주계획 가구수 : 주택용지 23가구→26가구, 기타시설용지 3가구
- 변경사유 : 화계지구 마을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
- 사업추진방식 : 공공기관 주도형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공공기관 주도형)

6.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 2016 ~ 2018년 → 2016 ~ 2019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8. 관련자료의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비고
합 계				28,560	28,254	
1	이동면 화계리	398	전	10,884	10,884	
2	이동면 화계리	411-1	도	154	154	
3	이동면 화계리	418-1	구	166	166	
4	이동면 화계리	422	답	2,240	2,240	
5	이동면 화계리	422-1	구	117	117	
6	이동면 화계리	423-3	구	66	66	
7	이동면 화계리	423-4	구	129	129	
8	이동면 화계리	424	목	6,132	6,132	
9	이동면 화계리	425-1	구	111	111	
10	이동면 화계리	426-1	구	134	134	
11	이동면 화계리	432-1	구	107	107	
12	이동면 화계리	484-1	답	982	982	
13	이동면 화계리	485-1	전	498	498	
14	이동면 화계리	486-1	답	475	475	
15	이동면 화계리	493	전	714	714	
16	이동면 화계리	494-1	구	56	56	
17	이동면 화계리	497-1	답	4,502	4,502	
18	이동면 화계리	499-2	답	675	675	
19	이동면 화계리	612-2	도	418	11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 2019 - 1225호

공시송달 공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9.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1255-1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19. 9. 9. ~ 2019. 9. 23.(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19. 8. 22. ~ 2019. 11. 31.(3개월간)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294)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상주면 양리	1272	1272-1	전	225.0	54.0	부산광역시 서대신동 2가 444	정군세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 2019-1227 호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추가(안 제3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19. 9.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문화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드림아동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전화 055-860-864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드림아동팀(055-860-8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 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u>규정된 사항</u></li> <li>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u>중요사항</u></li> </ol>

남해군 공고 제 2019 - 124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상하 수도사업소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소하천명	천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557-1 외 1필지		
	면적	20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9. 10. ~ 영구		
	목적 및 사유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소로3-52호선)		

남해군 공고 제2019-1263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2. 개정 이유

2018. 12. 18.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시 기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및 제정하였으므로 본 시행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폐지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0월 7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예규 제 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 폐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1264호

##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2018.12.18.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시 기존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므로 본 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폐지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0월 7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예규 제 호

##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예규]

남해군 예규 제294호

##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 인구시책과 인구증대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협의회는 남해군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거나 추진한다.

1.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추진
2.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반영
3. 군 인구시책 홍보 안내
4.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처리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군내 비영리단체장,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청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4.12.30. 훈령 제294호>

④ 협의회는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구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개정 2014.12.30. 훈령 제294호>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협의회 동의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획, 서무, 재정 등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

④ 간사는 효율적인 인구증대운동추진을 위한 행정업무처리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회 사무처리를 지원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2개월에 1회(셋째주 화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다음 회의시에 보고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협의회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상 별) ① 회장은 위원이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이 지대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특별한 과오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에는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훈령 제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남해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 을 “(민원봉사과장)” 으로 각각 하고, “종합민원실” 을 “민원봉사과” 로 각각 한다.

②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 을 “민원봉사 과장” 으로 하고, 제9조중 “지적관리팀장이” 을 “지적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로 한다.

③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남해발전기획단장, 사회복지과장” 을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으로 하고, “남해발전기획단 인구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를 “인구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④ 「남해군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을 “민원봉사과장, 행정과장” 으로 한다.

⑤ 「남해군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1. 본청 : 실·과장” 을 “1. 본청 : 실·과·단장” 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중 “3. 위원 :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경제과장, 재난안전과장” 을 “3. 위원 :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으로 한다.

⑥ 「남해군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 를 “주민복지실” 로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1265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따른 현지 확인 폐지(규칙안 제3조제2항)

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신청서 등 신설(규칙안 제5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0월 7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부와 현지” 를 “공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약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주택, 핸드폰), 지급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현황(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출산장려시책지원(신생아성명, 생년월일, 관계, 자녀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해군에서 수행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읍·면장 귀하

확인기관	확 인 내 용		해당여부	확인자
읍·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전 입 세 대 지 지 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  성명 (인)
	출 산 장 려 지 지 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 지 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고등학 교비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 입 학 생 지 지 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 청 구 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가정 (혼인신고일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핸드폰:	
신 청 구 분 내 용 기 재	전 입 신 고 일	전 거 주 지	
	전거주지 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현 택 황	소 재 지	소유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구입(신축)	<input type="checkbox"/> 임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금 액	원	면적    m <sup>2</sup>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 출 잔 액    원	
지급계좌 ( 신 청 인 본인명의)	금 용 기 관	지급계좌번호	
	신 청 금 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세대원 각 1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본인자필명
1.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다른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음.	
2-1. 6개월 이내 처분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음.	
3.주거자금 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대상 주택 거주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남해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 및 동의자                      성명 :                      (서명)

남해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주택, 핸드폰), 지급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현황(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출산장려시책지원(신생아성명, 생년월일, 관계, 자녀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해군에서 수행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읍·면장 귀하

확인기관	확 인 내 용		해당여부	확인자
읍·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전 입 세 대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  성명 (인)
	출 산 장 려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 입 학 생 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신청 및 확인) ① (생 략)</p> <p>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lt;신 설&gt;</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p>	<p>제3조(지원신청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공부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 제5항----- ----- ----- --.</p>



남해군 공고 제2019-1266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안 제3조)

1) 출산 시기에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방안 마련  
나. 다태아(쌍생아 이상) 출산지원 기준 마련 (안 별표 1)

- 1) 산모산후조리비 지원 :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원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출산아 1인당 100% 가산 지원

다. 2019 인구정책 아이디어 우수시책 반영 (안 3조, 별표 2)

- 1) 1인 전입지원 신설
  - 가) 전입축하금 : 1인당 10만원
  -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 10리터 10매
- 2)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퍼센트, 최대 1백만원, 조건이 맞을 시 최장 3년간 지원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0월 7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으로” 를 “등으로 인한”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전단 중 “전입세대” 를 “전입자” 로,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발행된” 을 “발행한”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주거자금 대출이자” 란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8. “신혼부부” 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생아” 를 “자녀의” 로 하고, “거주하고” 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입세대” 를 전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다.” 를 “경과한 전입자”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입세대 주민세” 를 “주민세” 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세,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은 전입하면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신축) 또는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다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제3호 단서 중 “단, 전입세대” 를 “다만, 전입”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1의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규정은 2019년에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첫째아이: 3백만원 ·일시금30만원, 매월15만원×18회  ○둘째아이: 4백만원 ·일시금40만원, 매월15만원×24회  ○셋째아이 이상: 5백만원 ·일시금80만원, 매월20만원×21회	행정과
	출산축하선물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 축하선물 제공 ·지원품목: 내의, 목욕타올 등 ·지원금액: 6만원 상당	보건소
	산모산후조리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인 1백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1인 50만원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급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다태아 출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 지급	보건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지원횟수: 3회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보건소
다자녀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 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행정과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조례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업료 등 지원 ·입학생: 입학금 + 수업료 ·재학생: 수업료	행정과
	남해사랑우대인증발급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 50% 할인	행정과

[별표 2]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전 입 지원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1인: 10만원 상당 ·2인 이상: 30만원 상당 ·4인 이상: 70만원 상당	민원봉사과
	주 거 자 금 대출 이 자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율의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횟수: 연1회. 단 대상자별 1회에 한한다. ○지원기간: 최장 3년	행 정 과
	전 입 세 대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균등분주민세 지원 ·지원기간: 2년간 ·지원금액: 부과금액 기준	재 무 과
	전 입 세 대 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빈집을 매입·임대하여 수선 또는 철거한 세대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당 150만원 지원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자에 한함	도시건축과
	전 입 세 대 영 농 정 착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세대가 농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경작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에서 과수류 묘목 또는 채소류 모종 현물 지원 ·50만원 이내에서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 현물 지원	농 축 산 과
	주차장이용권 제공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전입세대당 1대분 ·지원수량: 50매(500원/1매)	건설교통과
	남 해 사 랑 우 대 인 증 발 급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50% 할인	행 정 과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1인 전입 : 10리터 10매 ·2인 이상 전입 : 20리터 20매	환경녹지과
전 입 학 생	전 입 초 · 중 · 고	조례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행 정 과

# 남 해 군 공 보

2019년 9월 19일

제 645 호 (45)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지 원	학 생 지 원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전입대학생 지 원	<p>조례 제3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만, 지원기간 내 다른 시·군·구로 진출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입대, 휴학, 자퇴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 (※학기별 30만원)</p>	행 정 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등으로 인한</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전입세대</u>“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u>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u>를 말한다. 이 경우 <u>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1명 이상이 해당 세대에 편입한 경우</u>를 포함한다.</p> <p>5. (생략)</p> <p>6. “<u>남해화폐</u>“란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u>발행된 화폐</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전입자</u>“----- ----- ---- <u>전입신고를 한 사람</u> ---- ----. &lt;후단 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6. ----- ----- ----- <u>발행한</u> ----- -----.</p>
<p>&lt;신설&gt;</p>	<p>7. “<u>주거자금 대출이자</u>“란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u>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u>를 말한다.</p>
<p>&lt;신설&gt;</p>	<p>8. “<u>신혼부부</u>“란 혼인신고일 기준 <u>5년 이내의 부부</u>를 말한다.</p>
<p>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지원 대상) ----- -----.</p>



1. 출산장려 지원대상: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단서 신설>

가. · 나. (생략)

2. 다자녀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부모와 셋째아 이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단서 신설>

3. 전입세대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전입축하금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다.

나.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 지원, 주차장 이용권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은 제3조제3호가목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1. ----- 자녀의

-----

----- <삭제>

----- . 다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경우.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3. 전입자 -----

-----.

가. -----

-----

-----

----- 경과한 전입자

나. 주민세 -----

-----

-----

-----.

다만, 주민세,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은 전입하면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4.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전입세대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단, 전입세대 지원은 1회에 한한다.

4. (생 략)

제7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시책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미달되는 차액만을 지급한다.

4. (현행과 같음)

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신축) 또는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다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내용)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전입 -----  
--.

4. (현행과 같음)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별표1]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 책 명	적용 기준	지 원 내 용	담당 부서	구분	시 책 명	적용 기준	지 원 내 용	담당 부서
출산 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	(생략)	(생략)	(생략)	출산 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산 촉하선물	(생략)	(생략)	(생략)		출산 촉하선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모 산후조리비 지	(생략)	(생략) <u>&lt;신설&gt;</u>	(생략)		산모 산후조리비 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다태아 출산 다태아 출산의 경 우: 1인 초과인원 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급</u>	(현행과 같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생략)	(생략) <u>&lt;신설&gt;</u>	(생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다태아 출산 다태아 출산의 경 우: 1인 초과인원 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 지급</u>	(현행과 같음)
	영유아 로터바이러스 접종비지원	(생략)	(생략)	(생략)		영유아 로터바이러스 접종비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녀 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	(생략)	<u>○출생일 다음달부터 만6 세미만</u>	(생략)	다녀 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	(현행과 같음)	<u>○출생일 또는 전 입일 다음달부터 만6세미만</u>	(현행과 같음)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생략)	(생략)	(생략)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남해사 랑대인 증급 발	(생략)	(생략)	(생략)		남해사 랑대인 증급 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2]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별표2]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 기준	지 원 내 용	담당 부서
전입 세대 정착 지원	전 속 하 입 금 원	생략	○남해화폐 지급 <b>&lt;&lt;신설&gt;&gt;</b> ·2인 이상: 30만원 상당 ·4인 이상: 70만원 상당	생략
	<b>&lt;&lt;신 설&gt;&gt;</b>	<b>&lt;&lt;신설&gt;&gt;</b>	<b>&lt;&lt;신 설&gt;&gt;</b>	<b>&lt;&lt;신설&gt;&gt;</b>
	전입세대 주민 세 원	(생략)	(생 략)	(생략)
	주 택 주 리 비 지 원	(생략)	(생 략)	(생략)
	연 농 정 착 지 원	(생략)	(생 략)	(생략)
	주 차 장 이 용 권 공 제	(생략)	(생 략)	(생략)
	남 해 사 랑 우 대 인 응 급 발	(생략)	(생 략)	(생략)
	쓰 레 기 제 두 원 공 용 지	(생략)	○(생 략) · 지원규격: 20리터 · 지원매수: 20매	(생략)
전입 초·중· 고 학 생 지 원	전 초·중· 고 학 생 지 원	(생략)	(생 략)	(생략)
	전 대 지 입 생 원	----- ----- (단, 지 원 기 간 내 다 구로 출 력 이 아 다.)	○(생 략)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경 우 · 지원매수: 재학중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남해화폐 ·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생략)

구분	시책명	적용 기준	지 원 내 용	담당 부서	
전입 세대 정착 지원	전 속 하 입 금 원	(현행과 같음)	○남해화폐 지급 ·1인: 10만원 상당 ·2인 이상: 30만원 상당 ·4인 이상: 70만원 상당	(현행과 같음)	
	주 거 자 금 대 출 이 자 원	조례 제3 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율의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횟수: 연1회, 단 대 상자별 1회에 한한다. ○지원기간: 최장 3년	행정과	
	전입세대 주민 세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주 택 주 리 비 지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입세대 연 농 정 착 지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영 주 차 장 이 용 권 공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남 해 사 랑 우 대 인 응 급 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쓰 레 기 제 두 원 공 용 지	(현행과 같음)	○(생 략) ·1인 전입: 10리터 10매 ·2인 이상 전입: 20리터 20매	(현행과 같음)	
	전입 초·중· 고 학 생 지 원	전 초·중· 고 학 생 지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 대 지 입 생 원	----- ----- (단, 지 원 기 간 내 다 구로 출 력 이 아 다.)	○(현행과 같음)  <b>○&lt;&lt;삭 제&gt;&gt;</b>	(현행과 같음)